

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1993

제출년월일 : 2010. 8. 1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「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인용된 근거조문 개정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조문 개정

□ 주요골자

- 가.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개정(안 제1조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수도법 제30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0. 5. 7. ~ 2010. 5. 27.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현행조례 (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)

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한 10인”을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전임자의 임기”를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기”를 “회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각 1인을”을 “각 1명을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예산의 범위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, “정하는 바에 의하여”를 “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“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8조(수당 등)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

□ 관계법령 발췌서

○ 수도법(2007.4.11. 개정)

제30조 (수돗물평가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 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 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- ② 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